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17호> 2024년 9월 10일

정책/제도

USCO, “저작권과 AI” 첫 번째 보고서(Digital Replica)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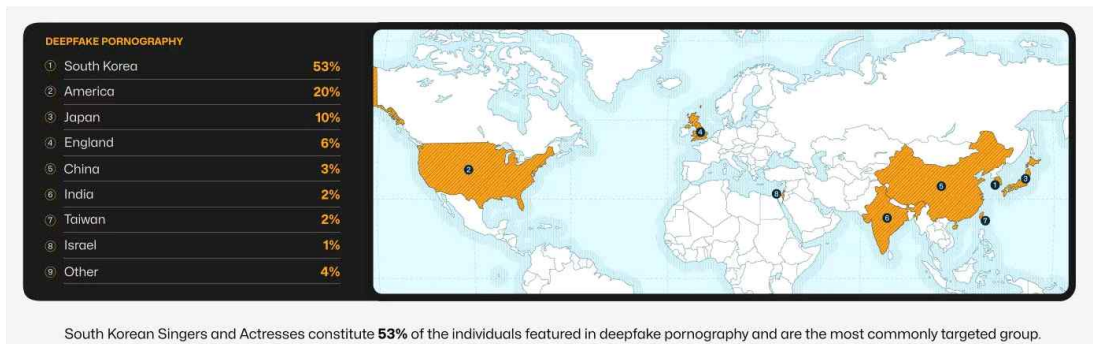
■ 배경

- 딥페이크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딥페이크(deepfake)는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한 단어로,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를 의미함

- 심지어 최근 국내에서는 일반인 얼굴에 음란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에서 공유된 바,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통은 새로운 SNS 성범죄로 떠오름. 특히 작년 말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가 홈페이지에 올린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 올라온 딥페이크 동영상 9만5820개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음란물 53%는 주인공이 한국 가수와 배우였음¹⁾

[그림] 딥페이크 음란물 주인공 국적 순위



* 출처 : 홈시큐리티히어로즈 홈페이지 캡처

- 이에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4년 7월말, 딥페이크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첫 번째

1) 이현승, “딥페이크 음란물 주인공 절반이 한국 가수·배우”, 조선비즈, 2024.8.30.

보고서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1편: 디지털 복제본」²⁾을 발표

- USCO는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의회가 무단 디지털 복제본(Digital Replicas)^{*}의 고의적인 배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정 시 고려요소에 대한 제언을 담음

* 디지털 복제본(Digital Replica)이란? 특정인을 거짓으로 묘사하기 위해 디지털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다시 말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비디오, 이미지 또는 오디오 녹음을 지칭

■ 주요내용

1. 「저작권과 AI, 제1편 : 디지털 복제본」

1) 개요

- (배경) 2023년 3월, USCO는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범위,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AI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 8월, AI로 인해 발생하는 IP 관련 문제를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한 공개의견을 수렴함.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작권과 AI」 시리즈로 주제별로 파트를 나누어 발간할 예정
-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향후에는 생성형 AI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창작한 자료의 저작권 인정 여부(copyrightability), 저작물에 대한 AI 학습 모델의 법적 의미, 라이선스 고려 사항, 잠재적 책임의 배분 등에 대하여 다룰 예정³⁾
- (딥페이크 콘텐츠와 저작권) 딥페이크 콘텐츠는 여러 면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음. ① 예술가, 공연자와 같은 창작자는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② 종종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이 디지털 복제본을 제작하는 데 사용됨. 또한 ③ 디지털 복제본은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작품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될 수 있으며, ④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 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유사함

2) USCO,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1. Digital Replica“, 2024.7.31.,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1-Digital-Replicas-Report.pdf>>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AI, 제1편: 디지털 복제본’ 보고서 발표”, 지식재산동향뉴스 2024-33권호, 2024.8.13.

2) 디지털 복제본으로 인한 피해

- (창작 분야) 음성 복제본과 이미지 생성기의 급증으로, 공연자 및 기타 아티스트들이 일자리나 수입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음악 산업에서는 사운드 녹음에 AI를 사용하면 진정성과 창의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인간 노동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
 - 예컨대 엑스트라 배우 대신 디지털 복제본 엑스트라를 사용하는 영화 프로젝트가 이미 있었고, 성우가 AI 복제본으로 대체된 경우도 있었음
- (기타) 그 밖에 피해로는 생성형 AI가 ① 노골적인 성적 덤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사용된다는 것과, ② 쉽고 정교하게 사기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 ③ 잘못된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들어 정치 시스템과 뉴스 보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연구자들은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복제본과 진짜 콘텐츠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함

3) 관련 법률의 부재

- 디지털 복제본은 기존 법률의 어떠한 영역에도 깔끔하게 포함되지 않음. 혹자는 이를 지식재산권법만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무단 디지털 복제본 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사기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야기
- (기존법률의 결점)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퍼블리시티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지 않는 반면, 다른 주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개인만 보호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불충분함. 기존의 연방법 역시 충분하지 않음
 -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침해가 광고, 상품,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널리 퍼져 있는 덤페이크 포르노를 포함한 비상업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 (저작권법) 저작자의 원본 작품을 보호하지만 개인의 이미지나 음성만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방지하지 못하며, 대상 개인은 작품 전체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법*) 상거래에서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디지털 복제본이 상업적으로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사례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상황에서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연방상표법*)** 보호대상이 잘 알려진 인물과 상업적 상황으로 제한됨.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와 공연자를 포함한 많은 개인의 경우 문제가 된 행위가 당사자 간 상업활동과 연관성이 있다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움

* the Lanham Act

- **(연방통신법*)** 무단 디지털 복제본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음. 단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공통 통신사 서비스, 전송 및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디지털 복제본의 사용 및 배포가 FCC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률 적용이 어려움

* Communications Act of 1934

4) 새로운 연방법률의 필요성 및 기존 법안

- **(의견수렴 결과)** 2023년 8월, 미 저작권청에서 실시한 공개의견 수렴에서 “인간 예술가의 정체성이나 스타일을 모방하는 생성 AI 출력물의 처리”라는 주제에 대해 약 1,000개의 의견이 수렴됨. 그중 90% 이상이 개인이었으며, 대부분은 새로운 연방 법률의 제정을 옹호
- **(제안된 법안)** 최근까지 의회에 정치 광고 및 통신,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허가받지 않은 디지털 복제본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⁴⁾이 여러 건 발의됨
 - 이러한 법안에는 AI가 생성한 친밀한 디지털 묘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친밀한 이미지의 딥페이크 방지법, 정치 광고에서 AI가 생성한 사운드나 이미지 사용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리얼 정치 광고법, 연방 선거와 관련된 사기성 AI 생성 미디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사기성 AI에 대한 선거 보호법 등이 포함됨⁵⁾
 - 광범위한 디지털 복제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로는 지금까지 두 개*의 법안이 제안되었음

4) Preventing Deepfakes of Intimate Images Act, H.R. 3106, 118th Cong. (2023); Protect Victims of Digital Exploitation and Manipulation Act of 2024, H.R. 7567, 118th Cong. (2024); DEFIANCE Act of 2024, S.3696, 118th Cong. (2024); TAKE IT DOWN Act of 2024, S.4569, 118th Cong. (2024).

5) REAL Political Advertisements Act, H.R. 3044, 118th Cong. (2023); Candidate Voice Fraud Prohibition Act, H.R. 4611, 118th Cong. (2023); REAL Political Advertisements Act, S. 1596, 118th Cong. (2023); 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 S. 2770, 118th Cong. (2023).

- * the No Artificial Intelligence Fake Replicas And Unauthorized Duplications (“No AI FRAUD”) Act⁶⁾
- * the 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NO FAKES”) Act of 2023⁷⁾

5) 새로운 권리에 대한 제언

- USCO는 새로운 디지털 복제권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받았으며, 수렴된 의견, 기존 법률 및 현재 입법 제안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추출, 이에 대하여 각각 제언함
 - 중요 요소로는, ① 디지털 복제의 정의, ② 보호 대상, ③ 보호 기간, ④ 금지 행위, ⑤ 2차 책임(secondary liability), ⑥ 라이선스 및 양도, ⑦ 수정 헌법 제1조 우려 사항의 수용, ⑧ 구제책, ⑨ 주법과의 상호 작용을 꼽음
- **(요약)** 디지털 복제권은 허가 가능해야 하며, 보호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양도할 수는 없고, 금전적 손해배상과 가처분 명령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이 있어야 함. 전통적인 2차 책임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OSP에 대한 적절한 조건의 safe harbor가 있어야 할 것. 법률에는 명시적인 수정 헌법 제1조 조정사항(accommodations)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의 퍼블리시티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주법을 전면적으로 우선시 해서는 안될 것

6) 아티스트 스타일 모방에 대한 견해

- 특정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대량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저작권청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추가적인 법적 보호조치의 확대는 반대함
 - **(기술적 사유)** 최근까지도 거의 완벽한 스타일 모방수단은 보급되지 않았고, AI 개발 시 살아있는 예술가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요청을 차단하는 보호 장치를 시스템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
 - **(정책적 사유)** 스타일 모방의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 상표법, 퍼블리시티권 등의 일반 법률로도 일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스타일 자체를 재산권과 같은 권리로 확장하지 않는 정책적 이유를 감안할 때 연방 디지털 복제법에 스타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6) No AI FRAUD Act, H.R. 6943, 118th Cong. (2024).

7) Sen. Chris Coons et al., NO FAKES Act Discussion Draft (2023), https://www.coons.senate.gov/imo/media/doc/no_fakes_act_draft_text.pdf.

필요는 없다고 봄

2. 국내 관련 정책동향

- **(정책적 대응)** 국내에서 역시 관련 법안 마련과 정책·기술연구 등의 정부 R&D 투자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에 힘을 쏟고 있음
 - **(법안)** 국회는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에서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 식별표시를 붙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 역시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되어 있음
 - **(입법활동)** 지난 3일 여당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향후 관련 TF를 구성해 입법안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⁸⁾ 나아가 여야 모두 딥페이크 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달 공청회까지 예고되어 있음⁹⁾
 - **(정책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하였음
- **(기술적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생성 억제기술 개발사업과 자기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사업 등 총 2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
 - 자기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총 4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될 예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물 이미지 유포를 차단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사업도 병행함¹⁰⁾

■ 시사점

-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 법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AI 콘텐츠 표시 의무화에서 나아가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8) 하지현, “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TF 구성 등 입법화 노력”, 뉴시스, 2024.9.3.

9) 심지혜, “딥페이크 논란에 여야 AI기본법 제정 속도 낸다…이달 공청회”, 뉴시스, 2024.9.3.

10) 송혜리·심지혜, “얼굴변화·혈류 불일치로 가짜영상 잡는다…딥페이크 탐지기술 어디까지 왔나”, 뉴시스, 2024.8.29.

참고자료

- USCO,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1. Digital Replica*”, 2024.7.31.
- 이현승, “딥페이크 음란물 주인공 절반이 한국 가수·배우”, 조선비즈, 2024.8.30.
- 송혜리·심지혜, “얼굴변화·혈류 불일치로 가짜영상 잡는다…딥페이크 탐지기술 어디까지 왔나”, 뉴시스, 2024.8.29.
- 심지혜, “딥페이크 논란에 여야 AI기본법 제정 속도 낸다…이달 공청회”, 뉴시스, 2024.9.3.
- 하지현, “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TF 구성 등 입법화 노력“”, 뉴시스, 2024.9.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AI, 제1판: 디지털 복제본’ 보고서 발표”, 지식재산동향뉴스 2024-33권호, 2024.8.13.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18호> 발간일은 9월 25일입니다.